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설치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¹⁾, 교량,

1)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 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공항 건설공사, 댐 축조공사, 고속도로공사, 에너지저장시설공사, 간척공사,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는 아래 [표]과 같이 ○○군 ○○면, ○○면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L=26km)”과 ○구 ○○동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L=12km)”을 추진하고 있다.

[표]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현황

항만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하수관로 건설공사,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구 분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비 고
위 치	○○군 ○○면, ○○면 일원	○구 ○○동 일원	
사업개요	하수관로 부설 L=26km 배수설비 544개소	하수관로 부설 L=12km 배수설비 136개소	
사 업 비	18,000 백만원	4,500 백만원	총 22,500 백만원
사업기간	2014 ~ 2018	2014 ~ 2018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울산광역시 ○○○○과는 2016. 2. 3. ○○○○과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요청’과 ○○○실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을 하여 2016. 2. 4. 심의결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결과를 각각 통보받았다.

그리고 2016. 2. 11. ○○○실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를 하여, 2016. 2. 12. ○○○실로부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16. 2. 15.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검토 보고 및 시행건의’의 내부결재를 득하였다.

울산광역시 ○○○○과는 2016. 2. 15.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 발주 검토” 시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과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공종이 동일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가 가능하고, “공사 현장이 읍·면·동의 마을별로 분산되어 있어 직접 상주 감독의 어려움으로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품질 미확보 등 부실공사 우려 및 각종 민원발생 시 대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

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였다.

정부합동감사 시 위 2건의 하수관로 건설공사의 공사현장 간 거리를 확인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최소 직선거리 23.2km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상으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과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우선하지 않고 2016. 2.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발주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6. 2. 12. 계약심사가 확정된 이후 2016. 2. 15.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검토 보고 및 시행건의’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을 검토하였고,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상에 해당되어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이 불가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통합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 및 시행을 건의하여 2016. 2. 1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는 등 ‘○○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외 1건의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그림] 공사현장별 거리 측정 자료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주의] 하수관로 등 환경시설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